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54호

행정처분 통지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7월 19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업체

업종 (인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
식품제조·가공업(주류) (제20200003986호)	주식회사연천주조	박*용	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468번길 52-16

2. 처분사항

○ **시정명령(2022. 8. 16일자)**

3. 처분사유

○ 「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4호에 의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·제조방법·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,

- 상기 당사자는 '연천(생)쌀막걸리'를 제조(2020. 10. ~ 2022. 3.)하면서 외국산 쌀을 원재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, 제품 포장지에 '연천쌀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'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령

○ 「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4호

○ 「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[별표 7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호 라목 4) 거)

5. 고지내용

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[서면 또는 온라인(simpan.go.kr)]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문의처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Tel: 02-2640-1316)